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4
----------	-------

제출년월일 : 2003.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재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 11. 29.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 관련조문의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유재산사무를 위임하면서 자치단체 귀속시키는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을 당해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사용료·대부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 매각대금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안 제3조 제2항)

나. 조례 제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정함. (안 제4조 제2항)

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명시함. (안 제13조)

라.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이자율은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 부과에서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마.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경우에는 제외함. (안 제23조)

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조정. (안 제25조의2)

사.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률적인 연15퍼센트에서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로 조정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28조제1항)

아. 지방제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인용법령 변경 (안 제31조2, 제38조의 2)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1조제1항중 “잔액에 연 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

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100조제6항 각호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2중 “영 제102조의4” 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8조의2 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38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김 명 준
	재산관리담당	최 영 호
	담 당 자	정 훈 수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사유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 (생략) ②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 (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 시킨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삭제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지정 (제3조 제2항 법령 삭제)
제13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조건으로</u> 붙여야 한다. 1~8 (생략) (신설)	제13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명시하여야</u>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허가조건	○ 감사원 규제사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 명칭변경 및 허가조건 명시

현행	개정	사유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5퍼센트의</u>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9. (생략)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연8퍼센트의</u>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연8퍼센트의</u>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략) 제2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 - - 잔액에 연4퍼센트의 - - - - - - - - - - - 1.~9.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잔액에 연6퍼센트의 - - - -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잔액에 연6퍼센트의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개정에 따른 이자를 인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현행	개정	사유
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설)	----- ----- ----- ----- ----- -----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25조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u>세입 세출예산의 현금</u>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 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5조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세입 세출의 현금</u>으로 ----- ----- ----- ----- ----- ⑤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u>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u>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 ----- ----- <u>교환차액을</u> ----- ----- ----- ----- ----- ----- ----- ----- -----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

현행	개정	사유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u>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원을 초과할 수 없다.</u>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2(신탁의종류)</u>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채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u>제31조의2(신탁의종류)</u> 영 제102조의5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번호 변경
<u>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u> ①~③ (생략)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5. (생략) ⑤~⑥ (생략)	<u>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u>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u>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13조가 '99. 5.24일 삭제됨에 따라 인용법령 변경